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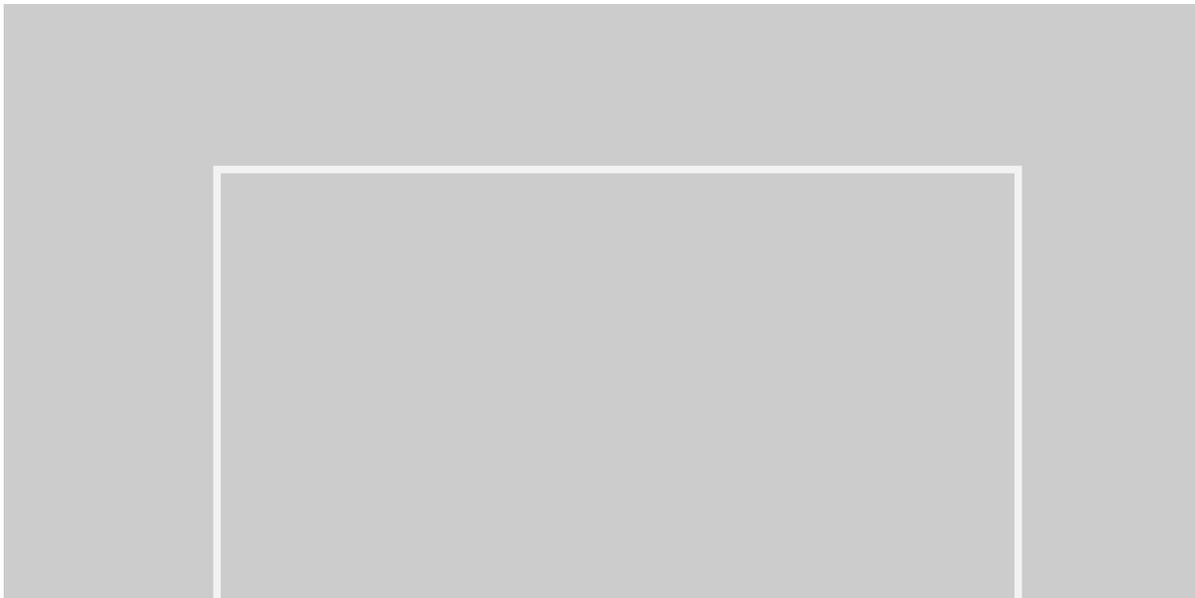
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

2024. 6. 20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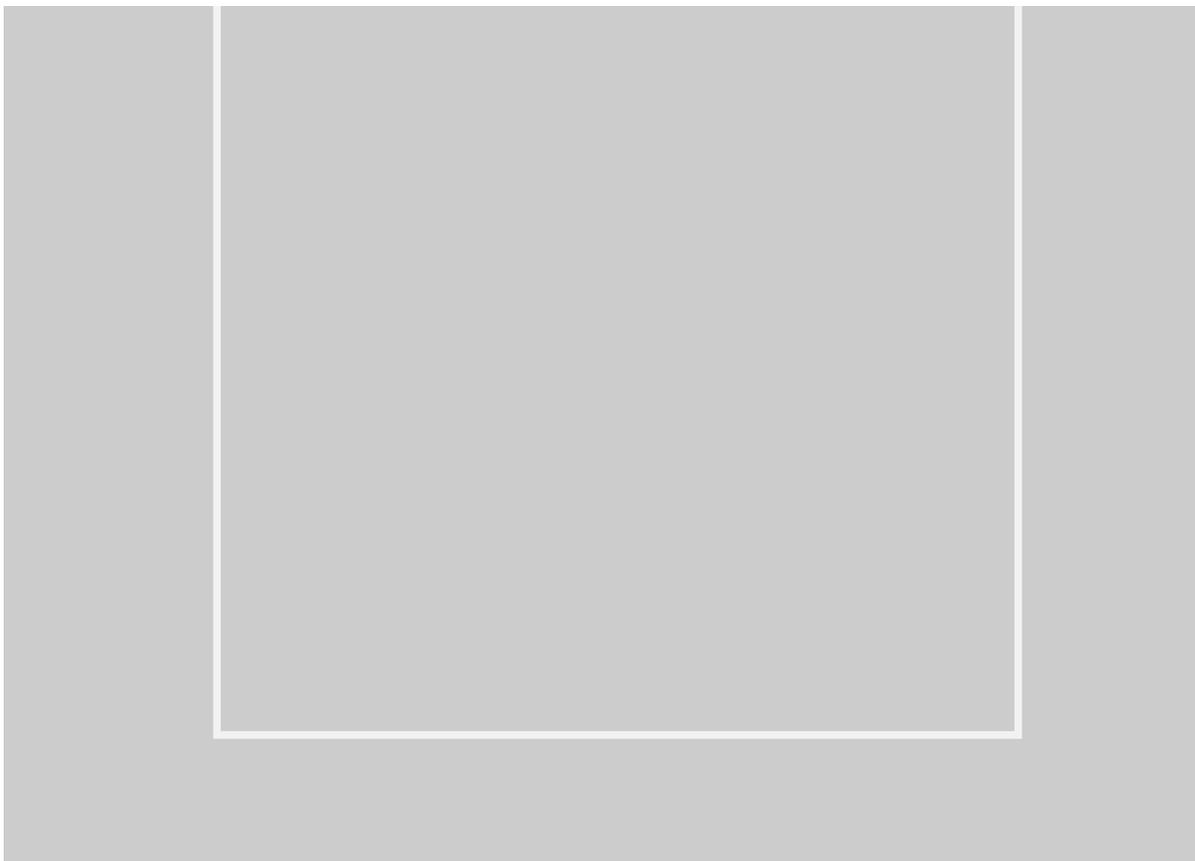
관계부처 합동

목 차

[요약]	i
I. 추진 배경	1
II. 합리적 관리방안	4
III. 추진 과제	6
1. 비전문인력 관리체계 개선	6
2. 전문인력 유치 및 숙련인력 양성	10
3. 유학 졸업생 등의 인력 활용성 제고	12
4. 지방 인력난 해소 지원	13
IV. 향후 계획	14
[참고1] 부처별 추진과제 이행 계획(안)	15
[참고2] 입법 사항	17
[참고3] 외국인력 체류현황	18
[참고4] 비전문인력 비자별 운영현황	19
[참고5] 외국인 관련 위원회 통합 검토 배경 및 경과	20



요약



I. 현황 및 문제점

1 추진 배경

- 생산인구 지속 감소 등에 따른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수요 폭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의 체계적 통합관리* 필요

*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외국인력 관리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 강구('23.6.26, 대통령)

- 내국인이 기피하는 단순·저숙련 분야에서 구인난이 심화*되고, 단순 노무인력 도입 관리와 함께 전문·숙련인력** 적극 유치 필요

* 빈일자리(만명): ('19) 17.8 → ('20) 12.7 → ('21) 16.6 → ('22) 22.1 → ('23) 21 → ('24.4월) 19.5

** '24.4월 외국인력 56.2만명(전년대비 3.5만명↑): 비전문 47.9(2.9만명↑)/ 전문 7.5(0.5만명↑)

2 현황 및 문제점

- (현황) ①(외국인력 관리) 비자별·부처별 분산 관리 → 시장변화 개별 대응
②(의사결정기구) 외국인(력) 등 유사한 정책 심의기구 각각 운영

① 전문인력 E1~7(법무부), 비전문인력 : 계절근로 E8(법무부, 지자체), 비전문취업 E9(고용부), 선원취업 E10(법무해수부) 등

② 외국인정책(총리, 법무부), 외국인력정책(국조실장, 고용부), 다문화가족정책(총리, 여가부)

- (문제점) 단기·산발적 대응으로 노동시장 전체관점 체계적 관리 한계

- (수요) 현장 기반 중장기 인력수급 정책과 연계 없이 단기수요 파악에 그침

- (공급) 비자별 산발적 확대* 및 노동시장 관점 총량 조정 미흡**

* △비전문취업(E-9) 쿼터: ('22) 6.9만명 → ('23) 11만명 → ('23.9월) 1만명 추가

△숙련기능인력(E-7-4) 쿼터: ('22) 2천명 → ('23) 5천명 → ('23.6월) 3만명 추가

** (비전문인력) 비자별 규모 결정으로 인해 농·어업 등 업종별 인력 정책과 연계 미흡

- (통계) 기관별 관리* → 업종별 수급 파악 등 통합 DB 역할 한계

* 계절근로관리시스템(법무부, 구축중), EPS정보시스템(고용부), 선원관리시스템(해수부) 등

- (관리) 일부 도입과정(E-8, E-10 등)에서 민간 업체 개입으로 과도한 송출비용*이 발생하여 외국 근로자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

* 1인당 송출수수료('23): (E-8) \$2,000~\$5,000, (E-10) \$5,500/ 불법 이탈보증금 요구 사례

◇ (추진경과)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 구성·운영('23.7월~)

- 국조실장(단장) - 실무TF(長: 국무1차장) - 법무·고용·기재·행안·산업·중기부 등

- TF 회의 30회 개최 + 현장 의견수렴, 전문가 회의 등 16회 실시

II. 개선 방향

- [기본 방향] ①수요자 중심 ②통합적 관리 ③공공 책임 강화를 통해
외국인력의 안정적 수급 및 활용성 제고

목표	외국인력의 안정적 수급 및 활용성 제고		
기초방향	인력정책 및 수급전망	인력규모 결정	도입·체류 관리
	비자별(단기) 대응 ⇒ 업종별(중장기) 분석	비자별 상이·복잡 ⇒ 통합·연계	민간의존/관리체계 미흡 ⇒ 공공 책임 강화
추진과제	非전문인력	① (수급 전망) 업종별 수요자 중심, 부처 인력정책과 연계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관부처 책임下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- 농축산업(농식품부), 어업(해수부), 제조·서비스업 등(고용부) 	
		② (도입규모 결정) 업종별 수요조사 → 총량 관리체계 구축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중심 부처간 협업체계 구축 - 업종별 조사(부처), 비자별 인력산정(각 협의체), 총량 총괄·조정(위원회) 	
		③ (도입 체계) 민간 도입 제도화 + 공공 책임 강화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민간) 민간업체 자격 기준, 평가·제재 등 제도화 ○ (공공) 지자체 도입역량 강화,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		
	④ (통계DB) 각 정보시스템간 연계 및 공동 활용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출입국관리시스템과 각 부처 외국인력 시스템 연계 		
전문인력	⑤ (체류관리) 불법체류 감축 및 업종별 체류지원 강화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불법체류 감축: ('23) 42만명 → ('27) 20만명대 ○ 업종별로 부처 책임관리 + 지역 유관기관 협업 		
유학생	⑥ 전문인력 적극 유치 및 숙련인력 양성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첨단기술인재 등 적극 유치를 위한 비자유건 완화 ○ 전문(기능) 인력 취업비자 신규분야 지속 발굴 ○ 비전문인력의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 (규모↑, 요건↓) 		
지방	⑦ 인력 활용성 강화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문분야 국한 → 비전문 분야로 취업 허용 ○ 구직 단계 취업·연수 기회 확대 		
심의	⑧ 지방 인력난 해소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역특화비자 정식 시행 → 인구감소지역 인력난 해소 지원 		
○ 외국인력, 외국인, 다문화가족 정책 → 총리 위원회로 일원화			

Ⅲ. 추진 과제

1 비전문인력 관리체계 개선

① [수급전망]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

- 그간 비자별 단기 대응 방식 →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수요자 중심 체계적 인력 정책 수립

【현행】 비자별 수급전망		⇒	【개선】 ^{부처} 업종별 수급전망 고도화	
E-8(계절근로)	▶ 법무부		농축산업(E-8, E-9)	▶ 농식품부
E-9(비전문취업)	▶ 고용부		어업(E-8, E-9, E-10)	▶ 해수부
E-10(선원취업)	▶ 해수부		제조/건설/서비스업 등(E-9)	▶ 고용부+관계부처

- 소관부처 책임 下 인력운영 주기적 실태조사 및 분석 체계 고도화

- * ▲(농식품부) 지역·품목별 농축산업 인력실태조사('24, 신규) → 외국인력 수요전망 분석
- * ▲(해수부) 어업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 지정('24.4) → 5년 수급관리 방안 마련('25.上)
- * ▲(고용부) 상시 분석센터 설치, 세부업종 단위 주기적 인력수요 심층 분석('24~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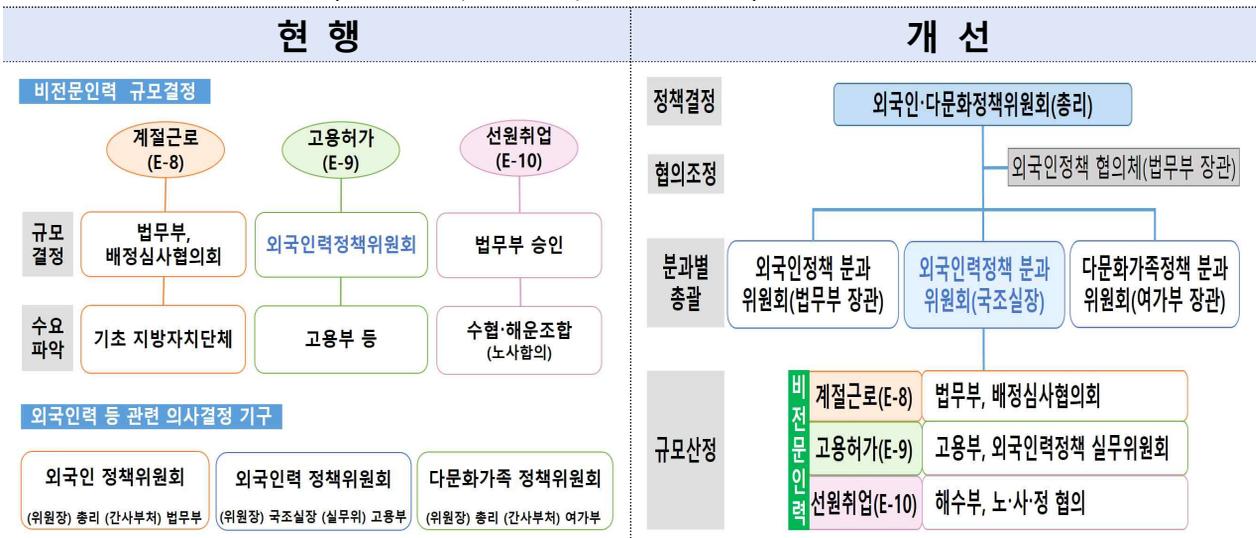
② [인력규모 등 의사결정] 총량 관리 체계 구축 + 외국인 정책 심의 일원화

- (비전문인력) ^{부처}업종별 수요조사 + 비자별 협의체 검토를 토대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*(국조실 주관)에서 총량 조정(외국인고용법 개정, '25.上)

* 관련법 개정 전까지 ^{부처}합동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 운영

- (외국인정책 등 심의기구) 외국인력(전문·비전문), 외국인 정책, 다문화가족 정책 등 총괄 조정 → ^{가칭}외국인·다문화정책위원회(총리)로 일원화(외국인처우법 개정, '25.上)

* 3개 분과위원회(외국인력, 외국인, 다문화가족) 및 정책 협의체 운영·조정



③ [도입 체계] 민간 도입 제도화 + 공공 책임 강화

- (민간) 알선업체에 대한 ▲자격기준 마련 ▲전문기관 평가·제재 등 민간 도입방식 제도화* 및 송출비용 합리화(과도한 송출료·보증금 금지)

* 선원법 개정안 및 내부지침 마련(해수부, '24.下) → 타 업종 확대 적용 추진

※ (중장기) 선원의 경우, 공공도입 시스템으로 전환 추진

- (공공) ^{계절근로}도입전문기관 지정 및 지자체 MOU 체결지원(법무부, '24~), 공공형 계절근로* 확대를 통해 부처 책임성 강화

* ▲농업(농식품부) : ('23) 19개소 → ('24) 70개소, ▲어업(해수부): ('25) 양식업에 신규도입

④ [정보 DB] 연계 및 공동 활용하여 부처별 정책수립에 활용

- 기관별 외국인력 정보시스템*을 출입국관리시스템 중심으로 연계 → 업종별 인력 정책 수립에 활용(법무부, 고용부, 해수부, 농식품부)

* ▲EPS 외국인력 정보시스템(고용부, '04), ▲선원관리시스템(해수부, '18),

▲계절근로 통합인력관리플랫폼(법무부, 구축중), ▲도농인력중개플랫폼(농식품부, '24)

※ (중장기) 외국인력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검토



⑤ [체류 관리] 불법체류자 감축 및 업종별 체류지원 강화

- (체류질서) 불법체류 감축 5개년('23~'27) 계획의 착실한 이행을 통한 불법체류자의 획기적 감소* (법무부)

* '23년 42만명 수준을 향후 5년내 20만명대로 감축 목표

- (단속 강화 등) ▲정부합동단속 정례화 등 상시 단속체계 가동, ▲불체자 특별자진출국 기간 운영, ▲불체 빈번국 사증 사전심사 강화

- (인프라 확보) 불법체류 단속인력 보강('24.7, 법무부·행안부)
 - * 단속보호 전담인력 : '24.3월 우리나라 651명(1인당 불체자 643명), '23일본 1,659명(1인당 불체자 48명)
- (체류지원) 업종별 부처 책임성 강화 + 지역 유관기관 협업시스템 강화
 - ▲중앙·지자체 협업 지역정착지원사업 운영('24~'27, 고용부),
 - ▲농·어업고용인력 전문기관 지정 및 인권보호상담 체계 구축,
 - ▲어선원 관리 체계화(선원관리 단계적 일원화, 선주단체 위탁감독 가형소형어선원법 제정 등 '24下)
 - 비전문인력 숙련도 강화를 위해 ▲장기근속특례(최장 10년 체류) 신설,
 - ▲우수성실 계절근로자(E-8)의 비전문취업(E-9, 4년10월)으로 연계 등

2 전문인력 적극적 유치 및 숙련인력 양성

- (인력체류 현황) ('23) 7.0만명 → ('24.4월) 7.5만명
- (문제점) ▲국내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미흡
- ▲국내 기능숙련 인력 수요 대응을 위한 취업분야 및 요건 제한적

- (첨단기술인재) 영주·귀화 및 전략적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개편*
 - *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('23~'27, 법무부) 내용('23.12월)
 - 해외 우수 연구자, 첨단산업 인재 비자 요건완화 및 인턴비자 운영
 - 국내체류 이공계 석박사 거주 요건 완화 → 영주(F-5)·귀화 유인
 - 개도국 대학생·졸업생 대상 SW교육 후 국내 스타트업 취업 연계
- (기능인력) 국내 기능수요 대응을 위한 신규 취업분야 신설
 - * ('24) 요양보호사, 항공기 제조원, 송전 전기원 3개 분야 신설 → ('25) 신설 검토 지속
- (숙련인력) 국내 체류 비전문인력(E-9)의 숙련기능인력(E-7) 전환 확대
 - 전환 쿼터 확대* 및 전환 요건(11→5개) 간소화**
 - * ('22) 2천명 → ('23) 35천명 → ('24) 35천명, ** 소득, 한국어능력, 연령, 가점, 감점 등

3 유학 졸업생 등의 인력 활용성 제고

- (유학생 현황) ('23) 15.2만명 → ('24.4월) 16.2만명
- (문제점) ▲ 유학 졸업생 및 가족의 취업분야 제한, ▲ 졸업 후 구직단계 취업·연수 기회 부족

- (비전문 분야 취업 허용) ▲ 유학생 졸업 후 비전문취업(E-9) 허용
▲ 유학생 부모를 계절근로(E-8)에 활용 등 추진
- (구직단계 취업·연수 기회 확대) ▲ 졸업후 구직허용 기간 확대(2년→3년),
▲ 조선사 연수 후 취업전환 추진, ▲ 육아휴직 대체 인력으로 활용
▲ 현장 중심의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지방 기업 취업 연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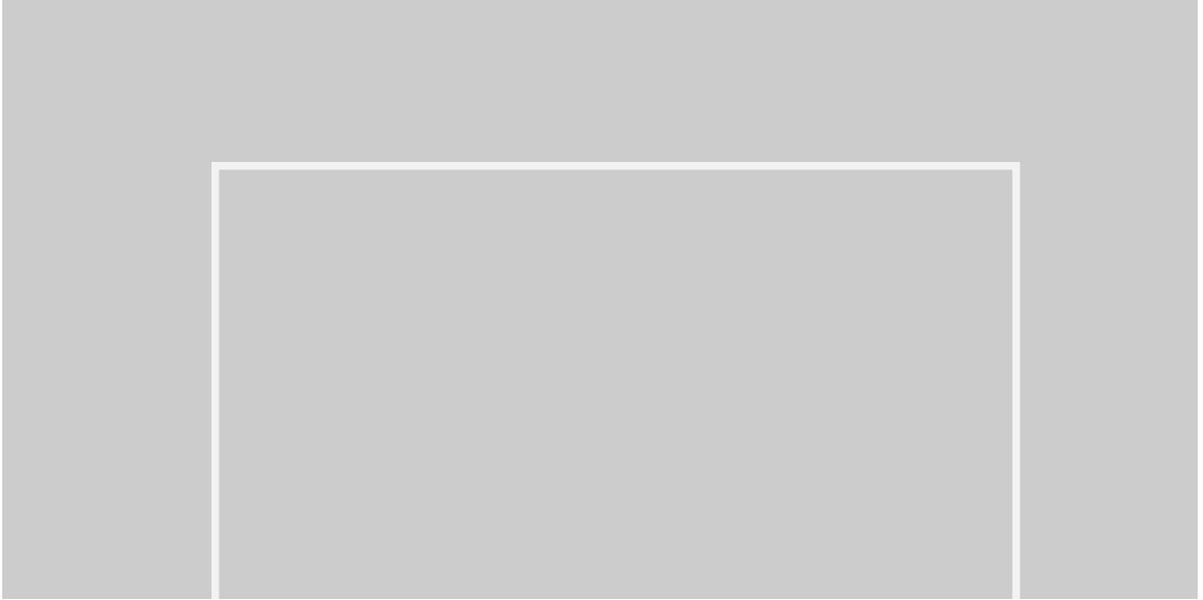
4 지방 인력난 해소 : 지역특화형 비자(F-2-R) 제도

- (인력 배정 현황) ('23) 1,500명 → ('24) 3,291명
- (추진방향) 본격 시행 및 지방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운영상 미비점 보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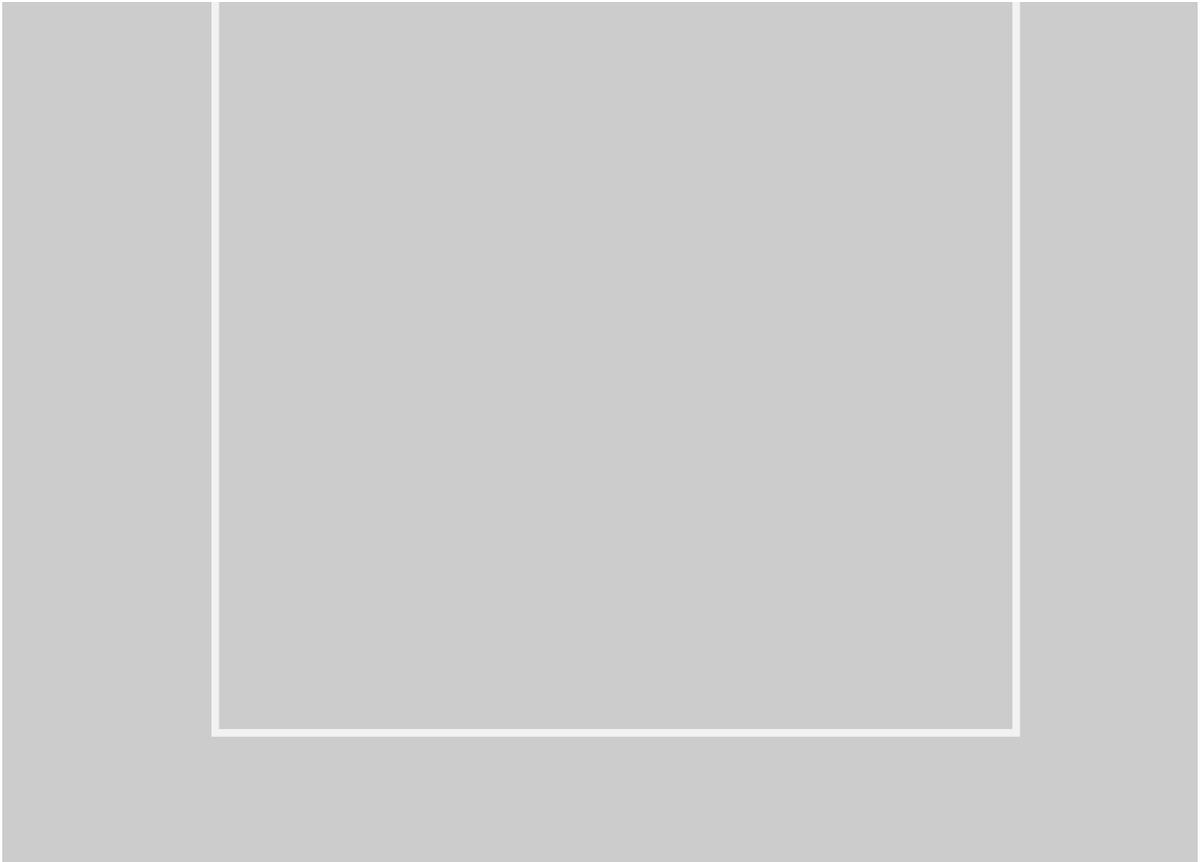
- 인구감소지역(지방분권균형발전법)에 일정요건을 가진 외국인에게 5년간 거주·취업조건 체류허용(F-2-R) 활성화
 - * (대상) 국내 전문대 이상 졸업(예정) 유학생 또는 전년도 GNI 70% 이상 소득 외국인 (경과) '22.10~'23.10. 시범시행 28개 지자체 1,500명 배정 → '24년 66개 지자체 3,291명 배정
 - 전환 요건* 및 지자체 추천 제한** 등 제도운영 개선
 - * 한국어 능력: ('23) 3급 이상 → ('25) 4급 이상
 - ** 지자체 추천 단일국적 비율: ('23) 50% → ('24) 40% → ('25) 30%

IV. 향후 계획

- 부처합동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 운영('24.7~, 관계부처)
- 법·제도 개선사항 등 부처별 추진과제 즉시 추진 ('24.7~, 각부처)
 - 부처별로 추진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·시행
 - * (시행령 이하 개정) 부처협의 거쳐 연내 개정 마무리 (목표)
 - (법률 제·개정) 연내 국회 제출 (목표)
 - 중장기 검토 과제(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등) → 관계부처TF 운영
- 추진과제 이행상황 주기적 점검·보고 (국조실)



PH **PH**



I. 추진 배경

❖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수요폭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의 통합관리 등 포함한 합리적 제도개선 필요

1 검토 배경

- (인구구조 변화)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생률이 가장 낮은 나라,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로, 조만간 인구절벽에 직면
 - (생산인구 감소) 총인구는 '21년 이후 감소로 전환, 생산연령인구는 '19년 이후부터 지속 감소 전망, '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
 - * △총인구(만명): ('20) 5,184 → ('21) 5,177 → ('22) 5,167 → ('30) 5,131 → ('40) 5,006
 - △생산연령인구(15~64세, 만명): ('19) 3,763 → ('20) 3,738 → ('25) 3,410 → ('35) 2,974
 - △고령인구(65세이상) 비중(%): ('20) 16.4 → ('25) 20.9(초고령사회) → ('35) 31.0
 - (지방소멸) 수도권 쏠림 현상 지속, '20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*, 전국 228개 시군구 중 59곳이 지방소멸 위기**
 - *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안('21.7월, 관계부처 합동)
 - ** K-지방소멸지수('23.5.15, 산업연구원)
 - (외국인력 수요) 내국인이 기피하는 단순·저숙련 분야에서 구인난이 심화* 되고, 단순 노무인력 도입 관리와 함께 전문·숙련인력** 적극 유치 필요
 - * 빈일자리(만명): ('19) 17.8 → ('20) 12.7 → ('21) 16.6 → ('22) 22.1 → ('23) 21 → ('24.4월) 19.5
 - ** '24.4월 외국인력 56.2만명(전년대비 3.5만명↑): 비전문 47.9(2.9만명↑)/ 전문 7.5(0.5만명↑)
 - (외국인력 관리) 비자 유형별 소관부처가 분산 관리*하여 통합적 관리·운영 한계 → 관리 비효율, 노동시장 변화에 탄력적 대응 곤란
 - * E-1~7(법무부), E-8(법무부, 지자체), E-9·H2(고용부), E-10(법무부, 해수부) 등
- ⇒ **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외국인력 관리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 강구**
('23.6.26, 대통령 지시)

☞ 노동시장 전체관점에서 총량적 외국인력 도입 관리 필요

☞ 외국인(력)·다문화 관련 유사정책 연계·조정을 위한 심의기구 효율화 추진

2 추진 경과

□ (추진TF 운영) 관계부처 합동 「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」 구축 운영('23.7.5~)

【 「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」 개요 】

- ▶ (기간) '23.7월 ~ '24.6월(1년)
- ▶ (참여) 국조실장(단장), 관계부처(법무·고용·기재·행안·산업·중기부 등)
- ▶ (구조) 추진TF(국조실장) - 실무TF(국무1차장) 연계 운영
- ▶ (회의) 추진TF 총 5회, 실무TF 25회로 총 30차례 회의 개최

○ (현장 목소리) 업종(제조·건설·농림·어업 등) 및 지역(수도권·비수도권)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반영(총9회)

* △선원취업·계절근로(여수)/조선업·지역특화(영암) 현장방문 간담회(9.18~19) △광역 지자체 외국인력 담당과장 간담회(8.25) △계절근로(횡성, 김천, 해남, 영주) 및 선원취업 실무자 간담회(9.1, 9.12, 9.13, 9.15, 10.12, '24.1.26) 등

○ (전문가 참여) 다양한 분야(경제학·법학·사회학 등), 다양한 기관(대학·국책연구소·지자체 부설 연구소 등)의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경청(총7회)

* △비자별(E-8/E-9/E-10) 제도개선 관련 전문가 발제·토론(9.1, 9.13, 9.15) △비숙련 외국인력 통합관리 방안 발제·토론(10.6) △전문가 의견수렴 회의(10.19, 10.20, 10.24) 등

○ (관계부처 의견) 고용부(노동시장·E-9·근로조건 보호), 법무부(체류관리, E-7-4 등), 농식품부(E-8), 해수부(E-10), 행안부·지자체(지역특화비자, 계절근로) 등 의견 수렴

< 참고: 외국인 정책 관련 심의기구 통합 논의(총리실, '15.12~'18.12) 주요사항 >

- **경제관계 장관회의**('15.12.16, 대통령 주재), 이민·외국인·다문화 정책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**관계부처 TF*** 구성, **외국인 관련 위원회 통합방안 검토**
 - * 국무조정실장(주재), 법무·고용·여가·기재부 차관 등

```

    graph LR
      A[외국인정책위 (법무부)] <--> B[다문화가족정책위 (여가부)]
      B <--> C[외국인력정책위 (고용부)]
      style A fill:#d9e1f2,stroke:#333,stroke-width:1px
      style B fill:#d9e1f2,stroke:#333,stroke-width:1px
      style C fill:#d9e1f2,stroke:#333,stroke-width:1px
    
```

- **외국인정책 TF**('16.5.4, 국조실장 주재), 외국인정책위·다문화가족정책위는 연석회의로,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운영 방안 도출
 - * 연석회의('18.2.12) 1회 개최 후 중단

3 현황 및 문제점

□ 현황

- (외국인력) 비자별로 인력규모 결정, 도입·관리 등 부처별 분산
 - 전문인력은 법무부, 비전문인력의 경우 계절근로법무부·지자체, 비전문취업·방문취업 고용부, 선원취업 해수부 등이 각각 운영

< '24.4월 외국인력 체류현황 및 주요 관리기관 >

		국내 체류 외국인(2,603) (단위: 천명)									
		외국인력(562)							유학생 (D-2)	기타 (거주영주 등)	
비자	전문인력(75)		비전문인력(479)				단기취업 등(7)				
	(E-1~6)	(E-7)	비전문취업 (E-9)	방문취업 (H-2)	계절근로 (E-8)	선원취업 (E-10)	단기취업 (C-4)	관광취업 (H-1)			
인원	24	51	327	100	32	21	3	4	162	1,879	
소관	법무부		고용부		법무부	해수부	법무부				

- (정책심의) 외국인(력)·다문화가족 등 정책 심의기구 각각 운영

위원회	주요 기능	비고
외국인정책위원회	▲외국인정책 주요사항(재한외국인 불법체류자 실태 조사 등) ▲국적취득자에 대한 사회 적응 등 심의·조정	(위원장) 총리 (간사부처) 법무부
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	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관련 주요사항(관련 조사, 지원사업 조정·협력 등) 등 심의·조정	(위원장) 총리 (간사부처) 여가부
외국인력정책위원회	고용허가제 대상 외국인력(E-9, H-2) 고용관리 및 보호에 대한 주요사항(도입 업종규모, 송출국, 취업활동 기간 등) 등 심의·의결	(위원장) 국조실장 (실무위) 고용부

□ (문제점) 단기·산발적 대응으로 노동시장 전체관점 체계적 관리 한계

- (수요) 현장 기반 중장기 인력수급 정책과 연계 없이 단기수요 파악에 그침
- (공급) 비자별 산발적 확대* 및 노동시장 관점 총량 조정 미흡**
 - * △비전문취업(E-9) 쿼터: ('22) 6.9만명 → ('23) 11만명 → ('23.9월) 1만명 추가
△숙련기능인력(E-7-4) 쿼터: ('22) 2천명 → ('23) 5천명 → ('23.6월) 3만명 추가
 - ** (비전문인력) 비자별 규모 결정으로 인해 농·어업 등 업종별 인력 정책과 연계 미흡
- (통계) 기관별 관리* → 업종별 수급 파악 등 통합 DB 역할 한계
 - * 계절근로관리시스템(법무부, 구축중), EPS정보시스템(고용부), 선원관리시스템(해수부) 등
- (관리) 일부 도입과정(E-8, E-10 등)에서 민간 업체 개입으로 과도한 송출비용*이 발생하여 외국 근로자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
 - * 1인당 송출수수료('23): (E-8) \$2,000~\$5,000, (E-10) \$5,500/ 불법 이탈보증금 요구 사례

II. 합리적 관리 방안

□ 기본 방향

< 외국인력 관리 >

- ① 수요자 중심, ② 통합적 관리, ③ 공공 책임 강화를 통해 외국 인력의 안정적 수급 및 활용성 제고

<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 기본 방향 >

인력정책 및 수급전망	인력규모 결정	도입·체류 관리
비자별(단기) 대응 ⇒ 업종별(중장기) 분석	비자별 상이·복잡 ⇒ 통합·연계	민간의존/관리체계 미흡 ⇒ 공공 책임 강화

< 정책 심의 기구 >

- 외국인(력), 다문화가족 등 유사 정책간 연계 미흡 → 심의기구 일원화 및 정책간 연계 강화

□ 고려 사항 및 추진전략

- (비전문인력)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일자리에 보충적 활용, 인력 수급 분석을 토대로 대규모 도입·관리 등의 특징 고려
⇒ 체계적인 총량 관리 추진 및 인력활용 쏠주기 공공 책임 강화
- (숙련 인력) 장기·안정적 인력 활용에 대한 현장수요 급증 고려
⇒ 장기체류·우수 비전문인력의 전환 및 숙련인력 양성
- (전문 인력 등) 국내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한 우수인재 유치, 안정적 정착지원 등 중점 고려
⇒ 현장수요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한 인력의 양과 질 관리 및 획기적 인센티브 제공 등 추진

☞ 인력별 특성을 고려한 개선방안 수립하여 장기적으로
비전문인력 → 숙련/전문인력 → 정주의 이동 사다리 촉진

〈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 개관도 〉

목표	외국인력의 안정적 수급 및 활용성 제고		
기초방안	인력정책 및 수급전망 비자별(단기) 대응 ⇒ 업종별(중장기) 분석	인력규모 결정 비자별 상이·복잡 ⇒ 통합·연계	도입·체류 관리 민간의존/관리체계 미흡 ⇒ 공공 책임 강화
추진과제	非전문인력	① (수급 전망) 업종별 수요자 중심, 부처 인력정책과 연계 ○ 소관부처 책임下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- 농축산업(농식품부), 어업(해수부), 제조·서비스업 등(고용부)	
		② (도입규모 결정) 업종별 수요조사 → 총량 관리체계 구축 ○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중심 부처간 협업체계 구축 - 업종별 조사(부처), 비자별 인력산정(각 협의체), 총량 총괄·조정(위원회)	
		③ (도입 체계) 민간 도입 제도화 + 공공 책임 강화 ○ (민간) 민간업체 자격 기준, 평가·제재 등 제도화 ○ (공공) 지자체 도입역량 강화,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	
		④ (통계DB) 각 정보시스템간 연계 및 공동 활용 ○ 출입국관리시스템과 각 부처 외국인력 시스템 연계	
		⑤ (체류관리) 불법체류 감축 및 업종별 체류지원 강화 ○ 불법체류 감축: ('23) 42만명 → ('27) 20만명대 ○ 업종별로 부처 책임관리 + 지역 유관기관 협업	
	전문인력	⑥ 전문인력 적극 유치 및 숙련인력 양성 ○ 첨단기술인재 등 적극 유치를 위한 비자유건 완화 ○ 전문(기능) 인력 취업비자 신규분야 지속 발굴 ○ 비전문인력의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 (규모 ↑, 요건 ↓)	
	유학생	⑦ 인력 활용성 강화 ○ 전문분야 국한 → 비전문 분야로 취업 허용 ○ 구직 단계 취업·연수 기회 확대	
	지방	⑧ 지방 인력난 해소 ○ 지역특화비자 정식 시행 → 인구감소지역 인력난 해소 지원	
	심의	○ 외국인력, 외국인, 다문화가족 정책 → 총리 위원회로 일원화	

Ⅲ. 추진 과제

1 비전문인력 관리체계 개선

【 비 전문 인 력 】

- 비전문인력 : 내국인 기피 일자리에 단기순환(취업활동 기간이 지나면 귀국, 가족동반 금지) 운영
 - (계절근로) 농작물 재배·수확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 단기간 취업
 - (비전문취업) 중소기업 등에 고용되는 조건으로 취업 허용, 17개국 도입지정
 - (선원취업) 어선원(20톤 이상), 내항선원, 순항여객선원(2천톤 이상)에 취업

계절근로(E-8)

비전문취업(E-9)
*고용허가제

선원취업(E-10)

체류기간 : 5개월~8개월

최장 4년10개월

최장 4년10개월

• (비전문인력 체류현황) ('22) 29.3만명 → ('23) 34.6만명 → ('24.4) 37.9만명
※ 방문취업(H-2) 미포함

** 쿼터(만명): ▲(계절근로^{도입}) ('22) 1.9 → ('23) 4.1 → ('24.上) 4.9 ▲(비전문취업^{도입}) ('22) 6.9
→ ('23) 12 → ('24) 16.5 ▲(선원취업^{총정원}) ('22) 2.1 → ('23) 2.3 → ('24) 2.3

☞ 산업현장 수요 증가로 대규모 도입상황 → 체계적인 총량 관리 필요

① [수급전망]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

- (현행) 업종별로 체계화된 수요분석 없이 비자(E-8, E-9, E-10 등) 중심으로 일시적인 현장수요에 단발적 대응
- (개선)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 인력 정책 수립

- 소관부처 책임 下 인력운영 주기적 실태조사 및 분석 체계 고도화

- * ▲(농식품부) 지역·품목별 농축산업 인력실태조사('24, 신규) → 외국인력 수요전망 분석
- ▲(해수부) 어업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 지정('24.4)→5년 수급관리 방안 마련('25.上)
- ▲(고용부) 상시 분석센터 설치(쏘업중), 세부업종 단위 주기적 인력수요 심층 분석('24~)

【현행】 비자별 수급전망

E-8(계절근로)	▶	법무부
E-9(비전문취업)	▶	고용부
E-10(선원취업)	▶	해수부



【개선】 부처업종별 수급전망 고도화

농축산업(E-8, E-9)	▶	농식품부
어업(E-8, E-9, E-10)	▶	해수부
제조/건설/서비스업 등(E-9)	▶	고용부+관계부처

② [인력규모 등 의사결정] 총량 관리 체계 구축 + 외국인 정책 심의 일원화

□ 비전문인력 총량 관리

- (현행) 비자별 유형별로 분산된 의사결정 구조로 업무중첩, 비효율 등 발생하고 노동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총량 관리 미흡
- (개선) ^{부처}업종별 수요조사 + 비자별 협의체 검토를 토대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*(국조실 주관)에서 총량 조정(외국인고용법 개정, '25.上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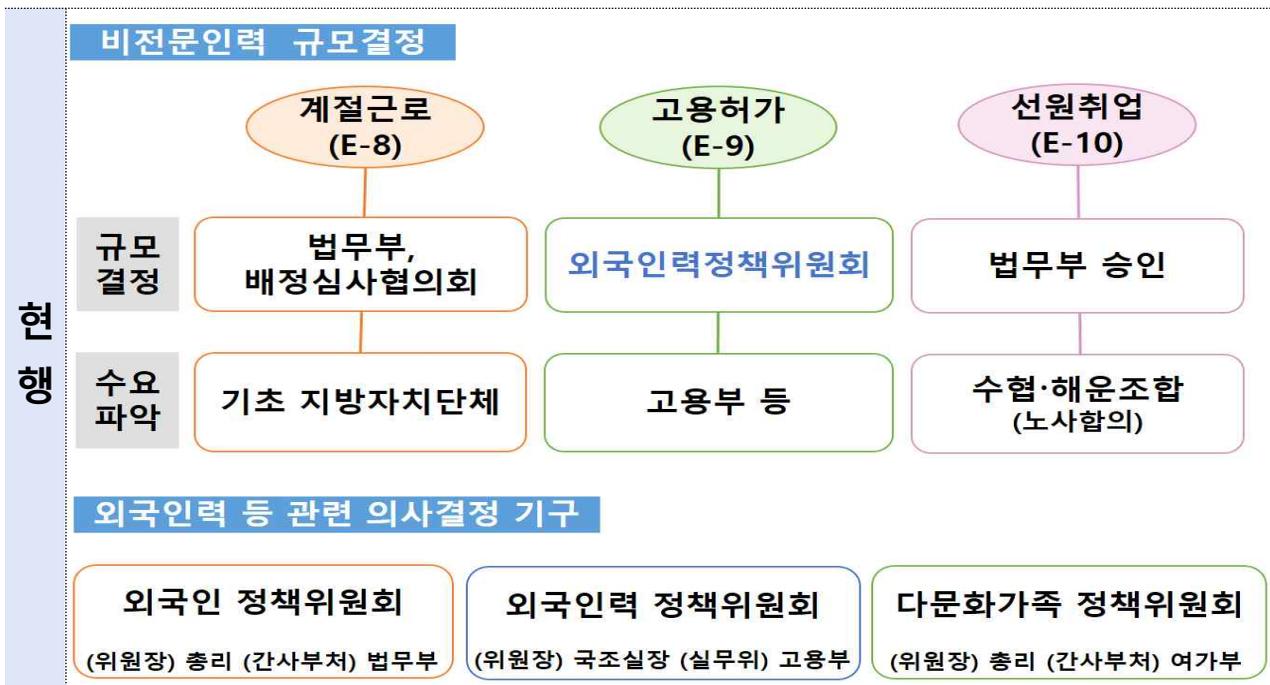
* 관련법 개정 전까지 ^{부처합동}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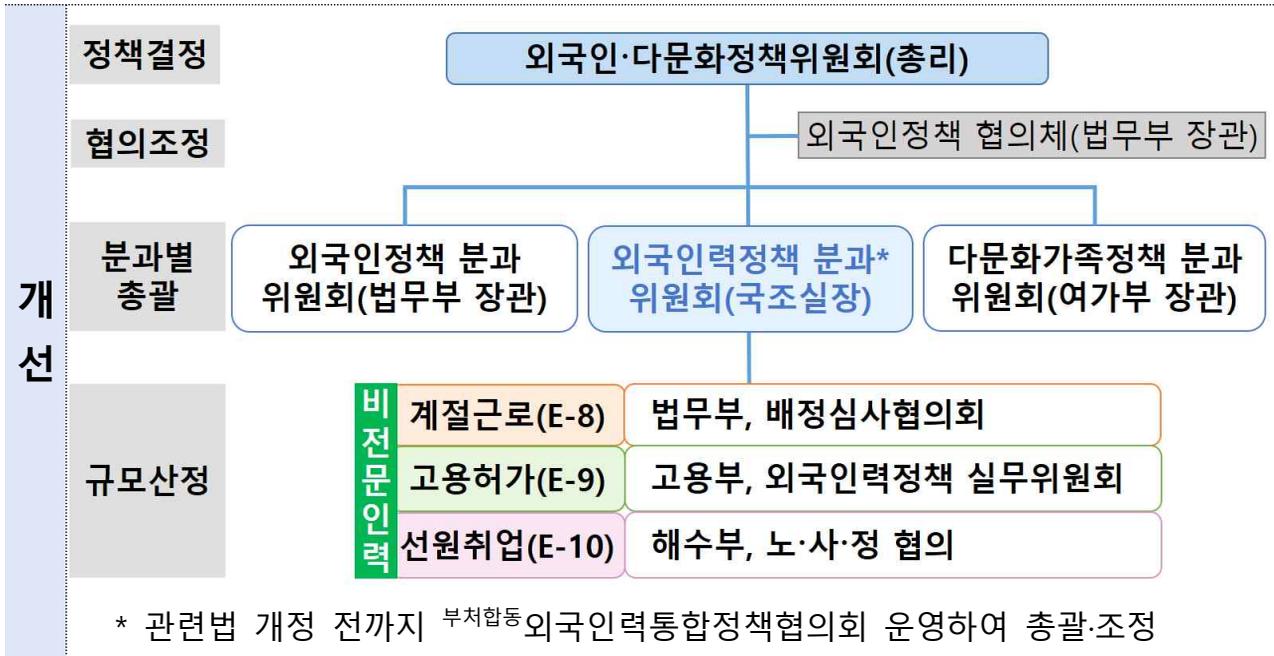
※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(법무부, '24~)와 연계 → 인력도입 예측가능성 제고

□ 외국인 정책 등 관련 정책 심의기구 일원화

- (현행) 외국인(력) 등 유사한 정책 심의기구 각각 운영
 - * 외국인정책위원회(총리, 법무부), 외국인력정책위원회(국조실장, 고용부),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(총리, 여가부)
- (개선) 외국인력(전문·비전문), 외국인 정책, 다문화가족 정책 등 총괄·조정 → ^{가칭}외국인·다문화정책위원회(총리)로 일원화(외국인처우법 개정, '25.上)
 - * 3개 분과위원회(외국인력, 외국인, 다문화가족) 및 정책 협의체 운영·조정

< 외국인(력) 등 총량 관리체계 전후 비교 >





③ [도입 체계] 민간 도입 제도화 + 공공 책임 강화

- (현행) 계절근로(E-8), 선원취업(E-10) 인력도입 과정에서 민간업체 개입, 특히, 지자체의 경우 조직·인력 등 역량 한계로 민간 의존도 상당
 - 민간업체 개입으로 과도한 송출비용 발생 우려 큼
 - * (사례) △필리핀, 민간 송출 비리 우려 등으로 계절근로자 송출중단 권고 조치('24.2.7), △해수부, 수협중앙회 감사 시 송출비용 관련 과도한 부담을 지적('20.2월)
 - ※ [참고] 고용허가제(E-9)는 공공 도입·선발 방식으로 송출비리 발생 우려 低
- (개선) 민간도입 방식에 대한 관리·감독 강화를 통한 외국인 부담 및 이탈 완화하고,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책임성 강화
 - (민간) 알선업체에 대한 ▲자격기준 마련 ▲전문기관 평가·제재 등 민간 도입방식 제도화* 및 송출비용 합리화(과도한 송출료·보증금 금지)
 - * 선원법 개정안 및 내부지침 마련(해수부, '24.下) → 타 업종 확대 적용 추진
 - ※ (중장기) 선원의 경우, 공공도입 시스템으로 전환 추진
 - (공공) ^{계절근로}도입전문기관 지정 및 지자체 MOU 체결지원(법무부, '24~), 공공형 계절근로* 확대를 통해 부처 책임성 강화
 - * ▲농업(농식품부) : ('23) 19개소 → ('24) 70개소, ▲어업(해수부): ('25) 양식업에 신규도입

④ [정보 DB] 연계 및 공동 활용하여 부처별 정책수립에 활용

○ (현행) 비자별·기관별로 정보시스템 운영·구축*하고 있으나, 부처 칸막이 등으로 업종별 소관부처의 정보시스템 접근·활용에 한계

* ▲ EPS 외국인력 정보시스템(고용부, '04), ▲ 선원관리시스템(해수부, '18),
▲ 계절근로 통합인력플랫폼(법무부, 구축중), ▲ 도농인력중개플랫폼(농식품부, '24)

○ (개선)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 중심으로 비자별·기관별 정보 시스템 연계하고 업종별 소관부처의 공동활용 체계로 개편

⇒ 업종별 인력 정책 수립에 활용(법무부, 고용부, 해수부, 농식품부)

※ (중장기) 외국인력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검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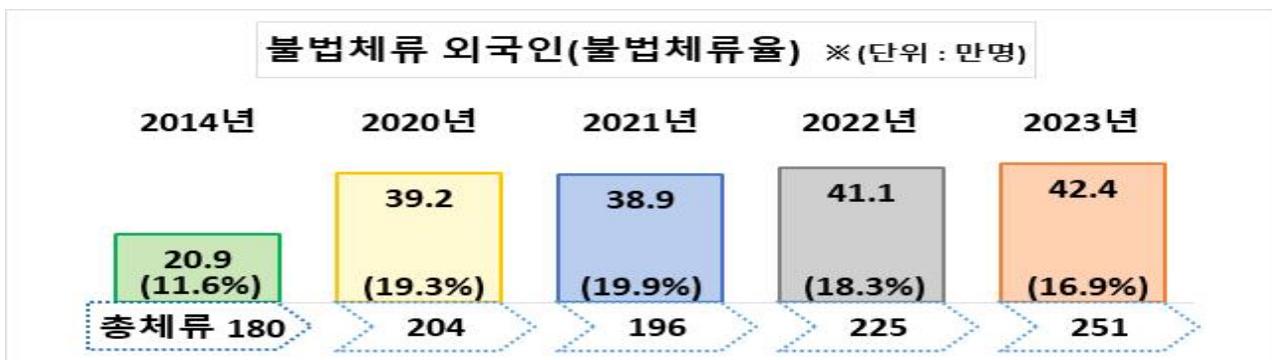
< 외국인력 정보 DB 연계활용 방안 >



⑤ [체류 관리] 불법체류자 감축 및 업종별 체류지원 강화

□ 체류질서: 불법체류자 획기적 감소

○ (현행) '22.9월 불법체류자 40만명을 넘어선 이후 증가세 지속 ('23년, 42.4만명)



- (개선) 불법체류 감축 5개년('23~'27) 계획의 착실한 이행을 통한 불법체류자의 획기적 감소('23년 42만명 → '27년 20만명대, 법무부)
 - (단속 강화 등) ▲ 정부합동단속 정례화 등 상시 단속체계 가동, ▲ 불체자 특별자진출국 기간 운영, ▲ 불체 빈번국 사증 사전심사 강화
 - (인프라 확보) 불법체류 단속인력 보강('24.7, 법무부·행안부)
 - * 단속보호 전담인력 : '24.3월 우리나라 651명(1인당 불체자 643명), '23일본 1,659명(1인당 불체자 48명)

□ 체류지원: 업종별 부처책임 강화

- (현행) 비자별 도입기관 중심의 체류 관리로 업종별 소관부처의 체류지원은 미흡*하고, 숙련인력에 대한 현장 수요 증가
 - * (사례) 계절근로의 경우, 법무부·자자체 중심으로 체류 관리하고,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 있는 농식품부·해수부의 체류 지원은 미흡
- (개선) 업종별 부처 책임성 강화 + 지역 유관기관 협업시스템 강화
 - ▲ 중앙·지자체 협업 지역정착지원사업 운영('24~'27, 고용부), ▲ 농·어업고용인력 전문기관 지정 및 인권보호상담 체계 구축, ▲ 어선원 관리 체계화(선원관리 단계적 일원화, 선주단체 위탁감독, 가령 소형어선원법 제정 등 '24.下)
 - 비전문인력 숙련도 강화를 위해 ▲ 장기근속특례(최장 10년 체류) 신설, ▲ 우수성실 계절근로자(E-8)의 비전문취업(E-9, 4년10월)으로 연계 등

2 전문인력 적극적 유치 및 숙련인력 양성

【 전문인력 】			【 숙련인력 】
• 특정활동(E-7): 전문지식·기술·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한 분야에서의 활동			
전문인력 (E-7-1)	준전문인력 (E-7-2)	일반기능인력 (E-7-3)	숙련기능인력 (E-7-4)
관리자 및 전문가 (67개 직종)	사무 및 서비스종사자 (9개 직종)	기능원 및 기능종사자 (9개 직종)	점수제(비숙련→숙련 전환) (3개직종)

• (전문·숙련인력 체류현황) ('22) 4.9만명 → ('23) 7만명 → ('24.4월) 7.5만명
 ☞ '23년 취업자격 이민자 중 비숙련 450,425명(85.6%) vs 전문·숙련 69,950명(13.3%),
 그간 단기·비숙련 인력 중심 정책으로 전문·숙련 인력의 유치·정착 미흡

① 첨단기술인재 등 적극 유치를 위한 비자유건 등 완화

- **(현행)**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 전문·우수인력 유치 전략 및 국내 정착 유인을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등 미흡
- **(개선)** 전략적 해외 유치 확대 및 국내 정착 유인을 위한 비자유건 완화 등 인센티브 마련을 통해 인재 유치 경쟁력 강화
 - *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('23~'27, 법무부) 내용('23.12월)
- **(해외유치)** 해외 우수 연구자 및 첨단산업 인재 대상 비자유 조건 완화, 인턴비자유 운영('22~) 등 비자유체계 개편을 통한 인센티브* 제공
 - * 고급 과학기술인력에 사이언스 카드 발급(과기부)→ 장기 체류, 가족 체류, 영주권 취득 요건 완화
- **(국내정착)** 이공계 석박사 우수인재 대상 거주요건 완화 등 맞춤형 정착·지원 서비스* 제공을 통해 영주(F-5)·귀화 유도
 - * 이공계 특성화기관 석·박사 학위 취득자가 총장 추천서를 받은 경우 취업 조건 없이 거주비자유(F-2) 부여, 점수제 요건 충족 및 연구실적 우수자에게 영주·귀화 허가
- **(인재육성)** 개도국* 대학 재학생·졸업생을 대상으로 SW분야 교육 과정을 제공 후 국내 스타트업으로 취업 연계 추진
 - * 우수인력 분포, 불법체류율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대상 국가 선정

② 전문인력 취업비자유 신규분야 지속 발굴

- **(현행)** 중장기적·종합적 분석 부재로 외국인력 도입 필요분야 및 규모 예측에 한계, 인재 유치·육성 전략에도 부정적 영향
- **(개선)** 과학적 분석 체계를 구축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문 외국인력의 도입 필요분야* 예측 → 신규분야 발굴 추진
 - * 반도체 등 전략 육성 산업, 대규모 인력부족으로 신속 도입이 필요한 주력산업 등
- **(신규분야 확대)** 취업비자유 총량 관리를 통해 국내 기능인력 등 전문인력 수요의 선제적 대응 → 신규 전문인력의 취업분야 신설*
 - * ('24) 요양보호사, 항공기 제조원, 송전 전기원 3개분야 신설 → ('25) 신규 분야 추가 검토

【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(법무부) 】

- ▶ (취업비자 총량 관리) 중장기적 관점에서 외국인력 도입 필요 업종(직종) 분석
→ 주요 분야별 3년간 취업비자 발급 총량을 사전 공표* → 기업·외국인력 등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

* △외국인력 취업 현황, △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에의 영향, △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종합 분석 → 데이터기반 과학적 이민정책 추진

** ('24년) 1년간 취업비자 사전 공표 시범도입 → ('25년) 본격 운영

3 비전문인력의 숙련기능인력으로서의 전환 확대

【 비전문인력 → 숙련인력 → 장기거주 비자 연계 】



☞ 단순노무(E-9, E-10, H-2) 외국인력이 4년 이상 체류하면서 능력 등이 검증되면 숙련기능인력(E-7-4) 비자를 취득, 그 후 5년 이상 체류, 소득 등 요건까지 갖추면 거주(F-2) 또는 영주(F-5) 취득

- (현행) 산업현장에서 숙련근로자의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, 이에 비해 숙련근로자의 안정적인 공급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

- (개선) 숙련기능인력(E-7-4) 전환규모 확대* 및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**을 통해 산업현장 수요에 상응한 숙련기능인재를 육성('23.9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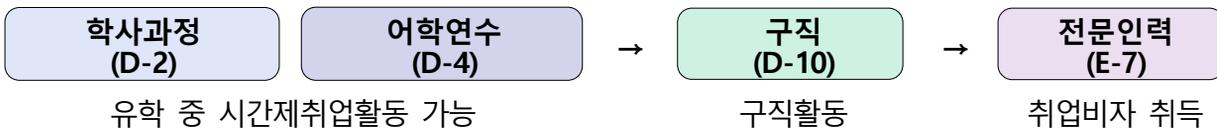
* ('22) 2천명 → ('23) 35천명 → ('24) 35천명

- ** ①11개 평가항목을 5개로 간소화(학력, 보유자산, 자격증, 교육·연수 경험 등 제외), ②사업장별 허용인원 확대(내국인의 20%이내 → 30%이내, 뿌리산업 등은 50% 이내), ③전자민원 신청 및 전담심사팀 운영 등

3 유학 졸업생 등의 인력 활용성 제고

【 유 학 생 】 졸업 후 취업연계

- 외국인유학생: 전문대이상 교육연구기관 또는 부설어학원에서 정규과정 또는 특정연구 중인 자



- (유학생 체류현황) ('22) 13.4만명 → ('23) 15.2만명 → ('24.4월) 16.2만명
☞ '10년 7만명에서 '22년 14만명으로 2배 증가하였으나, '22년 유학생 취업률은 16%에 불과 → 한국어능력 및 한국문화 이해도가 높은 유학생의 활용 저조

① 비전문분야 취업 허용 등 취업 분야 확대

- **(현행)** 유학 졸업 후 취업 허용 분야를 사무·전문직(E-1~7)에 한정, 제조·뿌리산업 등 비전문분야의 취업 선택권 제한
 - * 매년 약 2만 명 이상의 유학생이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있으나, 졸업 직후 취업(E-1~E-7)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수는 약 6% (1,360여명)에 불과
- **(개선)** 유학생에게 사무·전문직 외 비전문취업(E-9) 허용*(외고법 개정), 유학생 부모에게도 계절근로(E-8) 취업 허용으로 안정적 정착 지원
 - * (현행) 해외입국자만 허용 → (개정) 유학생 체류외국인 심사를 통한 허용 확대

② 구직 단계 취업·연수 기회 확대

- **(현행)** 기존 구직(D-10, 2년) 비자로는 구직활동 기간 및 연수 기회 부족으로 취업에 애로, 지방 유학생의 지역정착 지원도 미흡
- **(개선)** 구직(D-10) 단계 취업·연수 기회 확대로 전문분야 취업(E-7) 및 거주(F-2)로의 전환 활성화, 지역 중소기업 취업연계 지원
 - (취업·연수 기회 확대) 구직(D-10) 허용 기간을 확대(2년→3년), 조선사 연수 후 취업 전환 추진,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등 연수 기회 제공
 - (지방 기업 취업 연계) 지방 소재 대학 중심 유학생 취업맞춤반* 운영 → 지역 우수기업 취업 연계 지원, 우수인력 고용추천서(E-7) 발급 등
 - * 중소기업 이해 연수 등 현장 중심의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과정, 교육 운영비 지원(중기부)

4 지방 인력난 해소 지원

【 지역특화형비자(F-2-R) 】

- 지역특화형비자: 인구감소지역에 일정요건을 가진 외국인에게 5년간 거주·취업 조건 체류허용

인구감소지역

+

5년이상 거주

+

일정요건

→

지역특화형비자
(F-2-R)

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89개
지자체(행안부)

-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(예정) 또는 전년도 GNI 70%이상 소득
- 한국어능력 우수자 등

지방소멸 대응
지역 경제활동 촉진

• **(지역특화비자 배정 현황)** ('23, 시범) 1,500명 → ('24, 정식) 3,291명

☞ (시범사업) '22.10~'23.10. 28개 지자체에 1,500명 배정/1,467명 추천(97.8%)
→ (정식사업) '24년 66개 지자체 3,291명 배정

○ **(현행)** '23년 기준 국내 장기체류외국인(188만) 중 수도권 117만명(62%), 비수도권 70만명(38%) 거주 →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정착 유인* 필요

*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'지역특화형 비자' 신설('23년 시범실시)

○ **(개선)**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 점검·보완 → '24년 본격 시행을 통해 지자체 참여 및 활용 인력 확대 추진

- **(요건정비)** 지역사회 통합 촉진을 위해 한국어 능력 수준 상향*, 부적응으로 인한 집단화 억제를 위해 단일국적 비율의 점진적 하향**

* 한국어 능력: ('23) 3급 이상 → ('25) 4급 이상

** 지자체 추천 단일국적 비율: ('23) 50% → ('24) 40% → ('25) 30%

- **(지역 확산)**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·확산*, 설명회·간담회 등을 통해 참여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력체계 유지 및 의견수렴 지속 추진

* 우수사례 공유 및 우수 공무원 표창 수여를 위한 워크숍 개최('24.12월)

IV. 향후 계획

□ 부처합동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 운영('24.7~, 관계부처)

□ 법·제도 개선사항 등 부처별 추진과제 즉시 추진 ('24.7~, 각부처)

○ 부처별로 추진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·시행

* (시행령 이하 개정) 부처협의 거쳐 연내 개정 마무리 (목표)
(법률 제·개정) 연내 국회 제출 (목표)

○ 중장기 검토 과제(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등) → 관계부처TF 운영

□ 추진과제 이행상황 주기적 점검·보고 (국조실)

참고 1

부처별 추진과제 이행 계획(안)

1. 비전문인력 관리체계 개선

정책 과제		일정	부처
1	◦ 중장기 인력 수급전망 고도화	'24~계속	고용부
2	◦ 농축산업 인력실태조사 및 외국인력 수요분석 <small>[기발표]</small>	'24~계속	농식품부
3	◦ 어업 고용인력 지원 전문기관 지정 <small>[기발표]</small>	'24	해수부
4	◦ 어업분야 5년간 수급관리방안 마련	'25.상	해수부
5	◦ 고용전망 관련 상시 분석센터 설치	'24	고용부
6	◦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중심 협업체계 구축	'24.하	국조실
7	◦ 협업체계 구축 관련 외국인고용법 개정	'25.상	고용부
8	◦ 심의기구 일원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* 재한외국인처우법, 다문화가족지원법, 외국인고용법 개정 검토	'25.상	법무부 /고용부 /여가부
9	◦ 계절근로 도입전문기관 지정 <small>[기발표]</small>	'24	법무부
10	◦ 계절근로 관련 MOU 체결지원 <small>[기발표]</small>	'24~계속	법무부
11	◦ 농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<small>[기시행]</small>	'24~계속	농식품부
12	◦ 양식업 분야에 공공형 계절근로 도입	'25	해수부
13	◦ 선원취업의 민간업체 관리기준 제도화	'24~'25	해수부
14	◦ 출입국시스템과 외국인력 정보시스템 연계	'24~계속	법무부
15	◦ 계절근로 정보시스템 구축 <small>[기발표]</small>	'24~'25	법무부
16	◦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 계절근로 정보 탑재	'24	농식품부
17	◦ 불법체류자 정부합동 단속 <small>[기시행]</small>	수시	부처 합동
18	◦ 특별 자진출국 기간 운영 및 사전심사 강화 <small>[기발표]</small>	'24~계속	법무부 /행안부
19	◦ 불법체류 단속 인력 보강	'24.7	법무부
20	◦ 중앙·지자체 협업 지역정착지원 사업 운영 <small>[기시행]</small>	'24~'27	고용부
21	◦ 농축산업/어업고용인력 전문기관 지정 <small>[기시행]</small>	'24	농식품부 /해수부
22	◦ 농축산업/어업 외국인력 인권보호 상담체계 구축 <small>[기발표]</small>	'24~계속	농식품부 /해수부
23	◦ 어업분야 체류지원·위탁 등 법적 근거 마련	'25	해수부
24	◦ 어업분야 선원관리 일원화	'24~계속	해수부

정책 과제		일정	부처
25	◦ 장기근속특례 신설 ^[기 발표] ※ 외국인고용법 개정	'24.하	고용부
26	◦ 계절근로자를 비전문취업으로 연계 설계	'24.하	고용부
27	◦ 직업 훈련강화 프로그램 운영	'24~계속	고용부

2. 전문인력 적극적 유치 및 숙련인력 양성

정책 과제		일정	부처
1	◦ 해외 우수연구자, 첨단산업 인재 비자유건 완화 ^[기 발표]	'25.상	법무부
2	◦ 이공계 석박사 인력 거주 요건 완화 ^[기 발표]	'25.상	법무부
3	◦ 해외 대학생·졸업생 대상 SW 교육후 국내 스타트업 취업 연계 ^[기 발표]	'25.상	법무부
4	◦ 취업비자 총량 관리 ^[기 발표]	'24~	법무부
5	◦ 기능인력 분야 신규 취업분야 신설 검토 ^[기 시행]	'24~계속	법무부
6	◦ 비전문인력의 숙련기능인력 전환 확대.개선 ^[기 시행]	'24~계속	법무부

3. 체류 유학 졸업생 등의 인력 활용성 제고

정책 과제		일정	부처
1	◦ 유학생 졸업후 비전문취업 허용 ^[기 발표]	'25.상	고용부 /법무부
2	◦ 유학생 부모를 계절근로(E8)에 활용 ^[기 발표]	'24.하	법무부
3	◦ 유학 졸업자, 구직허용 기간 확대(2→3년) ^[기 발표]	'24.하	법무부
4	◦ 유학 졸업자, 조선업 연수 후 취업전환 추진 ^[기 발표]	'24.하	법무부
5	◦ 유학 졸업자,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활용	'24.하	법무부
6	◦ 지방 소재 대학 중심 유학생 취업맞춤반 운영	'25	중기부

4. 지방 인력난 해소 :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

정책 과제		일정	부처
1	◦ 지역특화비자 본격 확대 ^[기 시행]	'24~계속	법무부
2	◦ 지역특화비자로의 전환 요건 정비 ^[기 발표]	'24	법무부
3	◦ 지자체 추천 단일국적 비율 정비 ^[기 발표]	'25	법무부

* ^[기 발표] : '23.7월 이후 TF 운영 과정에서 개선책 발표·추진중
^[기 시행] : '23.7월 이후 TF 운영 과정에서 개선책 마련·시행중

□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 주요내용(법무부)

- 외국인정책위원회 명칭을 외국인·다문화정책위원회로 변경
- 외국인·다문화정책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외국인고용법 제4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 및 다문화가족법 제3조의4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사항 추가
- 외국인정책 분과, 외국인력정책 분과, 다문화가족정책* 분과 신설
 - *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3조의4(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) 조항도 개정 검토 필요

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(외국인고용법) 개정 주요내용 (고용부)

-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비전문인력* 분야 총괄·조정
 - * 계절근로(E-8), 비전문취업(E-9), 선원취업(E-10)
- 장기근속특례 신설
 - * 출국-재입국 절차 없이 최장 10년간 장기근속 허용
- 우수성실 계절근로자/유학생 졸업자를 비전문취업(E-9) 비자로 연계

□ 가정소형어선원법 제정(또는 관련법 개정) 주요내용(해수부)

- 외국인 어선원* 관리 단계적 일원화
 - * 20톤 미만 외국인 선원(E-9) 및 20톤 이상 외국인 선원(E-10) 관리 일원화 방안에 대해 구체 논의후 법안 마련
- 민간업체 관리기준(자격, 수수료, 평가·체재 등) 마련
- 선주 단체 위탁·감독 등

참고 3

외국인력 체류현황(2024.4월)

- '24.4월 총 체류 외국인은 260만명 (국내 총인구 5,130.3만명의 약 5.1%)
- 외국인력은 56.2만명: 전문인력 7.5만명(13.4%), 비전문인력 47.9만명(85.3%)
 - 고용허가(E-9, H-2) 42.7만명(75.9%), 계절근로 3.2만명(5.6%), 선원취업 2.1만명(3.8%)

□ 외국인력 체류현황

(단위 : 명)

구 분		'19	'20	'21	'22	'23	'24.4월
계		2,524,656	2,036,075	1,956,781	2,245,912	2,507,584	2,602,669
체류 외국인	소계	570,397	453,171	406,996	451,739	526,376	561,630
	전문인력	44,936	40,902	43,452	48,796	69,950	75,189
	비전문인력	520,680	409,039	361,526	398,621	450,425	479,205
	비전문취업(E-9)	276,755	236,950	217,729	268,413	310,825	326,621
	방문취업(H-2)	226,322	154,537	125,493	105,567	103,981	99,881
	계절근로(E-8)	-	-	383	4,767	14,143	31,522
	선원취업(E-10)	17,603	17,552	17,921	19,874	21,476	21,181
	단기취업 등(C-4, H-1)	4,781	3,230	2,018	4,322	6,001	7,236
	유학생(D-2)	118,254	101,810	111,178	134,062	152,094	162,322
	기타(거주·영주 등)	1,836,005	1,481,094	1,438,607	1,660,111	1,829,114	1,878,717

□ 불법체류 현황

(단위 : 명)

연 도	총 체류 외국인	불법체류외국인				불 법 체류율
		소 계	등 록	거 소	단 기	
2019년	2,524,656	390,281	95,815	1,316	293,150	15.5%
2020년	2,036,075	392,196	108,665	1,674	281,857	19.3%
2021년	1,956,781	388,700	125,022	1,427	262,251	19.9%
2022년	2,245,912	411,270	138,013	3,725	269,532	18.3%
2023년	2,507,584	423,675	137,954	2,034	283,687	16.9%
2023년 4월	2,354,083	417,852	139,155	1,849	276,848	17.8%
2024년 4월	2,602,669	417,211	136,357	2,146	278,708	16.0%
전년대비 증감률	10.6%	-0.2%	-2.0%	16.1%	0.7%	-

참고 4

비전문인력 비자별 운영현황

구분	계절근로(C-4, E-8) *법무부	비전문취업(E-9) *고용부	선원취업(E-10) *해수부
대상	농작물 재배, 수확, 수산물 원시가공 취업 외국인 *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1(단기체류자격), 별표1의2(장기체류자격)	외국인 고용법의 취업요건을 갖춘 외국인 *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(장기체류자격) * 외국인고용법 적용 대상 (제2조) : E-9, H-2 체류 자격 외국인	선원근로 계약을 체결한 선원법 적용대상 외국인 *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(장기체류자격)
체류기간	C-4 90일, E-8 8개월 *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 3(체류기간의 상한), 출입국관리법 제25조(연장허가) *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(E8 체류기간 : 8개월까지만 가능)	4년10개월(9년 8개월 限) * 외국인고용법 제18조(취업 기간 3년), 제18조의2(2년 미만, 1회 연장 可), 제18 조의4(재입국 취업은 1회 可), 제18조의3(H2 : 재입국 취업제한 未적용)	4년10개월(9년 8개월 限) * 선원취업 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(법무부)
취업분야	분야 농어업	제조·건설·농축산· 어업(20t미만), 서비스업	20톤이상 어선, 내항상선
	근거 *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제23조(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)	* 외국인고용법(제4조 외국 인력정책위원회 심의·의결 사항 : 외국인 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)	* 선원법 제3조(적용범위) : 20t미만 선박은 未적용
도입규모	인원 (²³ 년)40,647명 도입	(²⁴ 년)165,000명 도입	(²³ 년)총원 23,300명 도입
	절차 법무부 장관 (고용·농식품·해수·행안부 참여 배정심사협의회/상· 하반기 ⇔ 법적근거 미비)	외국인력정책위 (국조실·기재·외교·법무·산업· 고용·중기부/ 매년 12월)	노사합의 (선원노동조합단체와 선박 소유자 단체 합의 후, 해수부-법무부 검토(수시) ⇔ 법적근거 미비)
	근거 * 계절근로프로그램 기본 계획(법무부)	* 외국인고용법(제4조 외국 인력정책위원회 심의·의결 사항 : 외국인 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)	* 선원법 제115조 및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(해수부) 및 E-10 체류관리 지침 (법무부)
선발절차	(지자체) 도입신청 → (법무부) 배정심사협의회 → (지자체) 송출국과 MOU, 인력선발 → (지 자체) 농어가 배정 → (법무부) 사증발급·입국 → (지자체) 교육·계절근로 ⇔ 법적근거 미비	(고용부) 송출국과 MOU→ (송출국) 구직자 명부 작성 → (고용부) 고용허가서 발급 → (사용자·외국인) 근로계약 체결 → (법무부) 사증발급· 입국 → (고용부) 교육·사업장 배치	(노사) 도입규모 결정 → (선박소유자 단체) 송입 업체 선정 → (송입업체) 현지 송출업체와 계약을 통해, 외국인 선원 선발, 교육, 사증발급(법무부), 근로계약 등 전 과정 대행 ⇔ 법적근거 미비
	* 계절근로프로그램 기본계획 (법무부)	* 외국인고용법 제7조(외국인 구직자 명부의 작성)	*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 (해수부)
도입시기	2015년	2004년	2007년

□ **검토 배경**

- 외국인·다문화 관련 정책 심의기구로 3개 위원회 각각 운영
 - 위원회별 정책의 대상과 내용이 일부 중첩되고, 외국인 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·조정 및 연계 미흡

* (예)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대해 외국인투자·다문화투자 중복 점검 지적(감사원, '11.4월)

위원회	위원(민간)	주요 정책 및 대상	관련 법령
외국인정책위원회 (長: 총리, 법무부)	30명 이내 (민간 9명)	재한외국인(외국인 전체)의 출입국, 체류, 귀화, 통합, 인권보호 등 처우에 관한 정책	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(2007)
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(長: 총리, 여가부)	20명 이내 (민간 7명)	다문화가족(결혼 이민자 및 그 가족)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 지원정책	다문화가족 지원법(2008)
외국인력정책위원회 (長: 국조실장, 고용부)	20명 이내 (민간 없음)	단순노무 외국인력 도입·관리	외국인 근로자 고용법(2003)

⇒ 외국인·다문화 정책의 효율적 연계 및 위원회 기능 중복 해소를 위해 심의기구 통합 또는 연계 운영 검토 필요

□ **위원회 통합 논의 경과**

- 경제관계장관회의('15.12.16, 대통령 주재)
 - 이민·외국인·다문화 정책 등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TF(팀장: 국조실장)를 구성하여 총괄·조정 기능을 강화
 - ※ 3개 관련 위원회 통합은 중기적으로 검토
- 후속조치 일환으로 관계부처 TF 구성·운영('16.5월~'17.1)
 - * 국무조정실장(주재), 법무·고용·여가·기재부 차관 등 구성, 총 4회 개최
 - △외국인정책위·다문화가족정책위는 연석회의로, △외국인력정책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운영하는 방안 도출
- 연석회의('18.2.12, 총리 주재) 1회 개최 후 중단